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바라며 2021학년도 본교 학생 봉사활동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I. 봉사활동 연간 이수시간 <중요>

- 중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2022학년도 고입 선발 고사 내신성적 산출 기준은 30시간 이상 이수시 만점 적용)**

2021학년도 본교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년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간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개인계획(학교교육계획, 학교교육계획 외)에 의한 봉사활동
1학년	10시간	7시간	3시간 이상
2학년	9시간	6시간	3시간 이상
3학년	4시간	4시간	부족한 경우 봉사활동 실시

II.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구분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4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토,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 분단위는 절사
(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및 개인 교외 체험학습도 동일함(원격수업 시간에 봉사활동시 미인정)**

III. 개인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IV.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원칙

□ 개인 봉사활동 인정 범위

- 전라북도교육감, 교육청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나눔포털, DOVOL, VMS 봉사활동 실적 인정
(단,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
-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인정
 -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 함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VII.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인 외부 대면봉사활동 지양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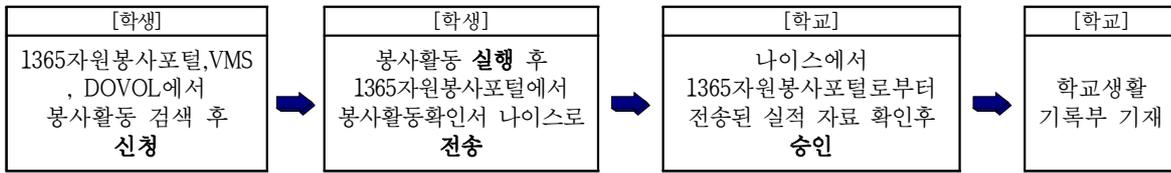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VIII.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6
전주평화중학교장